

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
「건축법」제4조 및 「파주시 건축 조례」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
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
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8월 19일

파 주 시 장

1. 모 집 명 :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

2. 모집분야

- 가. 건축 분야: 설계·계획, 구조, 시공, 토질 및 기초, 토목, 디자인, 설비, 전기, 통신
- 나. 도시·교통 분야: 도시계획, 교통
- 다. 범죄·방재 분야: 범죄예방, 방재
- 라.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분야: 법률, 층간소음, 주택관리, 회계
- 마. 안전 분야: 건설안전

3. 주요 심의내용

-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업무시설 또는 업무시설과
업무시설 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
- 나.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
주택
- 다.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- 라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71조 및 「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제14조에 관한 사항
 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·선임·해임·임기에 관한 사항
 -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공동주택(공용부분만 해당한다)의 유지·보수·개량 등에 관한 사항
 -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
- 마. 「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0조에 관한 사항
- 바. 건축조례 제·개정 등

4. 위원 임기 : 위촉일로부터 3년

5. 모집기간 및 접수처

- 가. 모집기간 : 2026. 8. 28.(금) 18:00까지(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)

나. 모집방법 : E-mail 제출(wprkfrlf@korea.kr)

※ 마감일 이후에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일괄적으로 다운받을 예정이므로, 상기 기
한까지는 전자우편 상 수신확인이 안된 것으로 표시가 되며, 유선상으로도 확인
은 해드리지 않습니다.

6. 응모자격 : 「파주시 건축 조례」 제6조

- 가.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나. 건축 관련 학회·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
- 다. 법학·경제학·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
이상 재직한 사람
- 라. 변호사·회계사·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마. 토목·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바.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으로
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- 사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
하는 사람
- 아. 시 소속 공무원
- 자. 시의원
- 차. 위생설비,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7. 제출서류

- 가. 후보자 등록신청서(Excel) 1부(별첨)
- 나. 자격 증빙자료(재직증명서, 기술사 자격증, 최종 학위증, 경력증명서 등)
- 다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
8. 통 지 :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

9. 기타사항

- 가. 위원 모집은 학회,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공개 모집과 외부 추
천방식으로 병행
- 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건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에만 활용함
- 다.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60%가 넘지 않도록 위원 선발
(단,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)
- 마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- 바.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지급
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허가총괄과 허가총괄팀(☎031-940-2961)으로 문의